

아직도 모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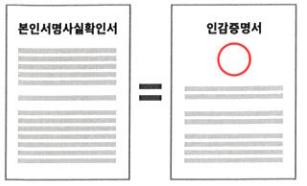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부기		서 명	보•••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제한물권 설정(기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그 밖의 용도(가동기 설치, 가동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식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제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세마율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증(예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류,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사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 법무사).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증기소, 차량등록사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치하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인감 사고 사전 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